

데이터3법, 오늘부터 시행됩니다



개 개인정보보호법 6대 변화

1.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

가명정보 규정

2. 통계, 과학, 공익기록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<가명정보>처리가능

3.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과징금 전체매출의 3%.

전체매출기준의 <징벌적 과징금> 최초 도입

4.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에

<가명정보>를 <결합전문기관>을 통하여 결합가능

준비되었나요? 보유정보 중에서 가명정보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별도관리해야 합니다

해당리포트 보기

[1.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규정](#)

[2.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](#)

5. 원래수집목적과 합리적관련이 있는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가능

준비되었나요? [해당리포트 보기](#)

협력업체가 변경될때마다 재동의받아야 했던 기존 3자제공 Data Flow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

6. 민감정보에 <바이오인증정보>, <인종민족정보> 추가

준비되었나요? [해당리포트 보기](#)

사내 <바이오인증정보>와 <인종민족정보> 보유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

<바이오인증정보> <인종민족정보> 수집시 별도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원문보기

1. 개정 개인정보보호법

<http://www.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18§ion=&eventGubun=060101&query=%EA%B0%9C%EC%9D%B8%EC%A0%95%EB%B3%B4%EB%B3%B4%ED%98%B8%EB%B2%95#undefined>

2.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

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govLm/2000000277334>

3. 신설 개인정보보호법고시 <가명정보의 결합및 반출등에 관한고시>

<https://www.mois.go.kr/frt/sub/a05/publicHearing/screen.do>